

#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방재정보  
광장



재난대비훈련지침



정책정보

# 재난대비훈련지침

제정 2013. 10. 16. 소방방재청 예규 제97호

## I. 총칙

### 1. 목적

- 이 지침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함)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 이라 함) 제 82조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 법 제14조 및 영 제15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의 대규모 재난의 대비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하여금 상시훈련체제를 구축토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2. 용어 정의 및 적용범위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용 어	내 용
재난대비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상황에서 수행해야 할 제반 사항을 사전에 계획·준비하여 재난대응 능력을 제고시켜 나가는 재난대비활동 중 하나로써 조직의 내부 구성원과 관련 인적자원을 대상으로 재난대응 절차와 조치 등 관련사항을 숙지 및 숙달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li> </ul>
재난관리책임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3조(정의)제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li> <li>-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영 제3조의 기관</li> </ul> </li> <li>긴급구조기관</li> </ul>
긴급구조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3조(정의)제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방방재청·소방본부 및 소방서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li> </ul> </li> </ul>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제26조제4호 · 제34조제3항 및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방사능재난 분야 훈련의 경우에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II. 재난대비훈련 개요

### 1. 훈련 필요성

- 모든 재난은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단계를 통해 관리되고 있지만, 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재난현장에서 작동하는 대응역량 제고가 매우 중요하고
  - 대응역량제고를 위해서는 평소부터 대응계획 수립, 이행절차서 작성, 교육·훈련, 환류·평가 등 재난대비활동이 필수 요소
- 또한 재난현장에는 일원화된 사고지휘 및 응원조정체계와 공공정보, 정보통신 지원, 방재자원지원 분야 공통협력이 필요
- 아울러 최근의 재난유형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다양한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의 역량과 고유 기능에 대한 협업행정기반의 횡적·종적 상호협력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

#### 협업행정이 필요한 재난대응 공통필수기능(13)

①상황관리총괄 ②긴급생활안정지원 ③재난현장 환경정비 ④긴급통신지원 ⑤시설응급복구 ⑥에너지기능복구  
⑦재난수습홍보 ⑧물자관리 및 지원지원 ⑨교통대책 ⑩의료방역 ⑪자원봉사관리 ⑫사회질서유지 ⑬수색·구조구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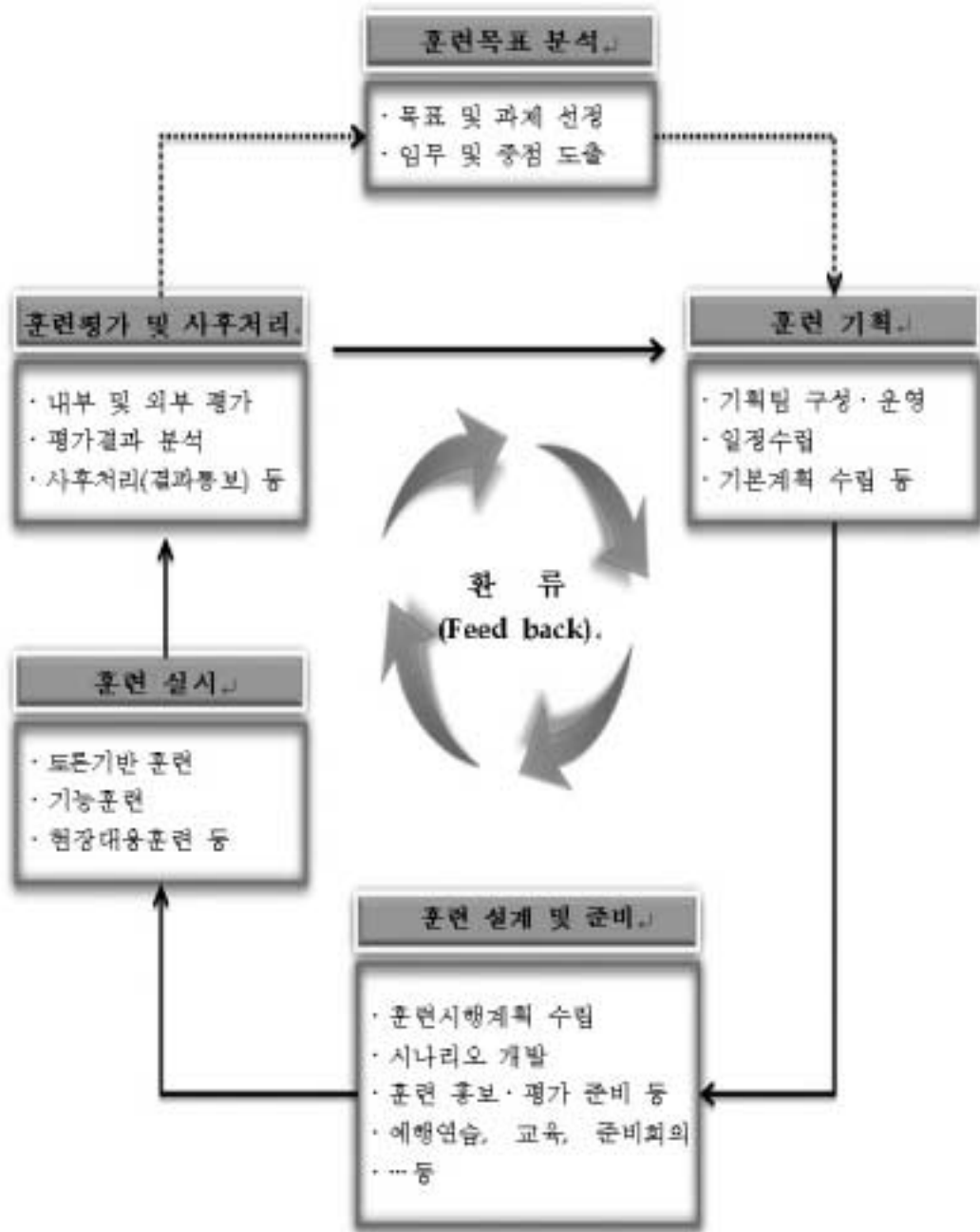
- 따라서 사고지휘체계, 응원조정체계, 공공정보, 정보통신, 방재자원 지원 등 공통협력분야에 대한 상호 협력체계가 전체적인 재난관리 틀 아래 움직이도록 평소부터 교육과 훈련 필요
  - 특히 재난현장 즉시 작동을 위해서는 다양한 재난을 상정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재난대비훈련이 중요함

**정책정보**

## 2. 훈련 주요 법령

용어	내용
재난대비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73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행정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과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지원기관 및 군부대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li> </ul> </li> <li>• 법 제73조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대비훈련에 참여할 것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li> </ul> </li> </ul>
훈련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73조제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54조에 따른 긴급구조대응계획과 법 제74조에 따른 표준화된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li> </ul> </li> </ul>
훈련 횟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 제82조제1항 및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참여하는 재난대비훈련을 각각 소관 분야별로 주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li> <li>- 자체훈련은 수시로 실시</li> </ul> </li> </ul>
훈련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73조 제2항에 따라 재난대비훈련에 참여할 것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li> </ul>
훈련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 제82조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일 15전까지 훈련일시, 훈련장소,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참여 인력 및 장비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li> </ul> </li> </ul>
훈련을 위한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 제82조제5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대비훈련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사전 교육을 하여야 함.</li> </ul> </li> </ul>
훈련 비용의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 제82조제6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대비훈련에 참여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참여하는 기관이 부담 함. 다만,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하여는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부담할 수 있음</li> </ul> </li> </ul>
훈련의 평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 제83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군수·구청장과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 중 훈련 특성에 맞는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재난대비 훈련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li> </ul> </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분야별 전문인력 참여도 및 훈련목표 달성 정도</li> <li>2. 장비의 종류·기능 및 수량 등 동원 실태</li> <li>3.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실태</li> <li>4. 긴급구조대응계획 및 세부대응계획에 의한 임무의 수행 능력</li> <li>5.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지휘통신체계</li> <li>6. 긴급구조요원의 임무 수행의 전문성 수준</li> <li>7.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평가에 필요한 사항</li> </ol>
훈련 평가결과의 통보 및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 제83조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군수·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재난대비훈련평가의 결과를 훈련 실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관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li> <li>- 통보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에 따른 재난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li> </ul> </li> </ul>

### 3. 훈련 과정



### Ⅲ. 상호협력훈련 및 환류체계 구축

#### 1. 훈련계획 수립 및 제출

- 별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의 주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3조제 및 영 제82조에 따라 수립한 안전행정부장관(이하 '장관' 이라 함) 및 소방방재청장(이하 '청장' 이라 함)의 재난대비훈련계획을 통보받은 후 30일 이내에 재난대비훈련 일정 등이 포함된 자체 훈련계획과 산하 기관(공공기관 및 단체 등)의 자체 훈련계획을 취합하여 제출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매년 법 제73조제1항 및 영 제82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장관 및 청장의 재난대비훈련계획을 통보받은 후 30일 이내에 재난대비훈련 일정 등이 포함된 자체 훈련계획과 관할 시·군·구의 자체 훈련계획을 취합하여 장관 및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가. 훈련 분야 및 실시

-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법 제3조에서 규정한 재난유형 중 과거사례 및 각종 자료를 통한 위험도분석을 통해 각 기관이 대응해야 할 발생 가능한 재난을 선정, 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 중앙행정기관 중「위기관리표준매뉴얼」을 관리하고 있는 주무부처는 해당 분야에 대한 재난대비훈련을 매년 실시하여야 함
  - 주무부처의 장이 해당 재난유형에 대한 대비훈련을 위해 참석을 요청한 경우 유관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장관 및 청장이 필요 시 재난유형을 지정하여 재난대비훈련 실시를 요구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나. 훈련 중점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초기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 훈련유형은 토론기반 또는 실행기반(기능훈련, 현장훈련 등)훈련으로 실시할 수 있음
  - 기관장 및 해당 간부가 참여하여 재난발생 초기 시 임무와 역할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각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관 또는 연관되는 대응 매뉴얼에 대한 적절성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고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음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대비훈련 시 재난의 효율적 대응을 위하여 관계 기관 간 공통 필수기능에 대한 원활한 상호협력체계를 점검하고 재난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대비훈련 시 재난의 효율적 대응을 위하여 관계 기관 간 공통 필수기능에 대한 원활한 상호협력체계를 점검하고 재난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대비훈련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책정할 수 있음

#### 다. 훈련횟수 및 상시훈련체계 구축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73조 및 영 제82조제1항에 의하여 장관 및 청장이 수립·주관하는 재난대비훈련계획에 따라 재난대비훈련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1회, 재난유형별로 실시되는 월별훈련 1회
  - 다만, 국가위기관리매뉴얼 주관(작성)기관이 아닌 부처는 소방방재청과 사전 협의하여 월별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관련법에 따라 훈련참여를 요구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매년 실시하는「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참여하여야 하며, 안전한국훈련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기관은 훈련기간 중 자체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유형에 대하여 필요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상시훈련을 실시하는 등 상시훈련을 통한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해야 함
  - ※ 필요성평가 = 위험도분석 + 훈련으로 위험 저감 정도(훈련 이유)

#### 라. 기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기후변화 및 사회적 수요 변화에 따른 새로운 재난유형을 도출하여 대응 절차를 정립하고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재난대비훈련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안전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정책 정보**

### 협업행정기반 재난관리 상호협력체계 및 통합시스템 구축





## 2. 훈련 환류체계 구축

### 가. 훈련 평가 계획수립 및 실시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주관하는 자체 재난대비훈련 계획을 수립할 경우 훈련 특성에 맞는 평가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체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할 경우 내부 또는 외부 평가단을 구성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나. 훈련결과 제출

- 위기관리표준매뉴얼(재난분야) 주무부처(중앙행정기관)는 해당 재난유형에 대한 훈련, 자체 주관 훈련, 타 기관 주관 참여훈련 등 해당연도에 실시한 재난대비훈련 결과 보고서를 장관 및 청장에게 매년 12. 31까지 제출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해당연도에 실시한 모든 재난대비훈련(자체주관 및 참여 훈련 포함) 결과 보고서와 관할 시·군·구에서 실시한 재난대비훈련 결과 보고서를 취합하여 장관 및 청장에게 매년 12. 31까지 제출하여야 함
- 시·군·구청장은 해당연도에 실시한 모든 재난대비훈련(자체주관 및 참여 훈련 포함) 결과 보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훈련결과 보고서에는 평가결과와 훈련의 성과 및 개선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다.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고 훈련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이행하여야 함
- 개선계획은 단기·중기·장기 등으로 구분하여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함

## IV. 재난대비훈련의 기본요소

재난대비훈련의 기본요소	①훈련 목표 ②훈련 내용 ③훈련 조직 ④훈련 자원 ⑤훈련 공간 ⑥훈련 문서 ⑦훈련 유형 ⑧ 훈련 절차
-----------------	---

### 1. 훈련 목표

#### 가. 훈련 목표 설정

- 재난대비훈련은 훈련의 지향점을 목적으로 훈련을 통하여 수행된 과업의 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게 설정된 기준을 훈련 목표라 할 수 있음

**정책 정보**

### 나. 훈련 목표 설정의 원칙

- 시나리오 개발의 기본골격이 되고 평가의 기준을 제시하는 훈련 목표는 단순하고(Simple) 측정 가능하며(Measurable) 달성할 수 있고(Attainable), 현실적이며(Realistic), 업무중심적(Task-oriented)으로 설정 함(SMART 원칙)

#### [ 훈련 목표 설정(예시) ]

- 훈련주체가 훈련계획에서 통신기능을 검증하기로 했다면, 다음과 같이 SMART 원칙에 따른 훈련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음
  - ▶ "00시와 00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간 주 통신체계가 재난으로 마비된 경우 30분내에 통신체계를 가동 시킨다."
- 훈련 목표의 수는 훈련을 적기에 실시하고 시나리오를 합리적으로 개발하여 훈련 목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 목표의 수를 제한할 수 있음
- 훈련유형의 특성에 따라 토론기반 훈련은 전략적이고 정책적인 문제에, 실행기반 훈련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초점을 두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훈련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 됨

## 2. 훈련 내용

### 가. 재난대응에 필요한 중요 역량의 실행과정을 훈련

상황관리총괄, 긴급생활안정지원, 재난현장 환경정비, 긴급통신지원, 시설 응급복구, 에너지 기능복구, 재난수습 홍보,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교통대책, 의료·방역, 자원봉사관리, 사회질서유지, 수색, 구조·구급 등

### 나. 재난발생 시 가동되는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을 훈련

- 비상대책기구(대책본부, 수습본부 등) 구성 여부 및 시기
- 비상대책기구에 의한 경보발령 및 조정
-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 중요자원의 동원 및 동원령 해제 등

### 다. 조직간 상호협력 및 조정 과정을 훈련

- 회의를 통한 공동대처 방향의 결정
- 필요한 정보의 공유
- 인력·물자 등 자원의 응원
- 대응활동 시 발생하는 중복·혼선 등의 조정 등

### 3. 훈련 조직

구 분	내 용	예 시
유형별 훈련주관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형별 훈련을 계획·실행·평가 하는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유형의 위기관리 주관기관</li> </ul> </li> <li>•총괄 및 조정조직, 유관조직과 긴밀한 협의체계 구축·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전 대비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통상자원부</li> </ul> </li> <li>•의료보건 분야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부 등</li> </ul> </li> </ul>
유형별 훈련유관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형별훈련 주관조직이 시행하는 훈련에 참여하는 조직으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관 및 총괄·조정, 평가조직을 제외한 정부부처·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단체, 주민조직 등</li> <li>- 해당유형의 위기관리 유관기관 및 관련조직 등이 해당</li> </ul> </li> <li>•주관조직의 훈련 준비·실행에 적극 참여·협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전 대비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축산식품부 등</li> </ul> </li> <li>•의료보건 분야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방부 등</li> </ul> </li> <li>•방사능방재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주민단체 등</li> </ul> </li> </ul>
훈련총괄 및 조정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정한 훈련체계 또는 제도를 총괄 및 조정하는 조직</li> <li>•법령에 따라, 훈련의 계획·실행·평가의 총괄 및 조정 권한을 가진 조직</li> <li>※ 유형별 훈련 주관조직과는 구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한국훈련」총괄 및 조정 민방위훈련제도 총괄 및 조정 - 소방방재청</li> <li>•비상대비훈련제도 총괄 및 조정 (안전행정부)</li> </ul>

### 4. 훈련 자원

훈련 자원	내 용
인적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훈련에 참여하는 정부부처·지자체의 공무원, 공공기관·단체의 직원, 민간단체 구성원, 현직주민, 자원봉사자 등</li> </ul>
물적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물적자원은 훈련을 통해 배양 및 숙달하려는 역량 등과 관련되는 시설·물자·장비·도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신·화재진압·인명구조·응급의료·응급복구·비상대체·교통·취사·지휘소·상황실 등에 필요한 시설·물자·장비·도구 등</li> </ul> </li> </ul>
기능 및 시스템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훈련의 효율적인 진행과 과학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 데이터베이스, 훈련상황관리 전산시스템, NDMS, 훈련유형 관련 업무전산망 등</li> </ul> </li> </ul>

**정책 정보**

## 5. 훈련 공간

훈련 공간	내 용
의사결정 및 총괄조정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제 재난관리 과정에서 의사결정 및 총괄조정과 관련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 있는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안전관리위원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의 의사결정 및 총괄 · 조정기관이 다양한 피해 및 파급영향과 관련하여 행하는 의사결정 및 총괄 · 조정하는 내용들을 훈련</li> </ul> </li> </ul>
대응 및 복구 주관·지휘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발생 이후 대응 및 복구활동을 주관·지휘하는 조직이 있는 공간으로 각 유형의 재난관리를 주관하는 중앙부처가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공간에서는 해당 유형의 재난 발생에서 종료에 이르기까지 주무부처가 유형별 주관기관 및 중앙수습본부로서 대응 및 복구에 관한 활동을 주관·지휘하는 내용을 훈련</li> </ul> </li> </ul>
상황관리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 발생 이후 대응 및 복구에 관한 활동에 필요한 각종 상황정보를 모니터 및 종합하여 보고·전파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을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로 총괄 및 조정, 대응 및 복구 주관·지휘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에 속한 공간으로서, 이 공간에서는 상황정보 모니터 및 종합을 통해 의사결정 및 상황대처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훈련을 실시 함</li> </ul> </li> </ul>
현장대응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이 발생한 주요 현장으로서, 현장인력을 중심으로 대응 및 복구활동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최일선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인력을 중심으로 초기대응 및 응급복구, 현장 통제, 피해자 처리, 비상자원 투입 등에 관한 훈련을 실시 함</li> </ul> </li> </ul>
지원·협력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이 발생한 경우 주관기관에 대한 지원·협력활동을 하는 유관기관과 기타 조직이 위치해 있거나, 이들 조직이 실제로 지원·협력활동을 하는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관기관 및 관련조직이 위치하여 주관기관에 대한 지원·협력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주관기관 활동의 지원·협력활동을 훈련</li> </ul> </li> </ul>

## 6. 훈련 문서

- 훈련 문서는 훈련을 준비·실행·평가하는 과정에서 필요하여 수립하는 문서를 말하며, 주요 문서로는 훈련계획서, 훈련시나리오 및 관련문서, 훈련평가서 등이 있음

훈련 공간	내 용
훈련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련을 실시하기에 앞서 훈련을 구체적으로 기획하는 문서로서, 재난대응 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수록하여 수립</li> <li>- 재난대응 훈련계획서는 주관기관이 종합적으로 기본 및 세부계획을 작성하고, 유관기관은 훈련의 해당 부분에 관해 시행계획을 수립</li> </ul>
훈련시나리오와 관련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나리오와 시나리오 작성에 필요한 조직별 임무와 역할, 재난상황스토리보드, 재난대응업무흐름도, 표준행동조치사항(SOP) 등이 있음</li> <li>- 관련 문서들은 훈련 시나리오 작성에 필요한 내용들을 식별·상정·도출·구체화한 문서로서,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내용들을 제시하는 선행문서 임</li> </ul>
훈련평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련의 성과달성 정도를 확인하고, 재난 발생 시 임무수행 가능성을 진단하며, 다음 훈련의 소요를 도출하여 제반 미비점을 발굴, 보완하는데 필요한 문서(평가계획서, 평가서, 평가결과서 등)</li> </ul>

## 7. 훈련 유형

- 훈련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훈련유형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이해함으로써 훈련준비의 효율화를 도모하여야 함
- 훈련의 유형은 토의를 중심으로 하는 토론기반 훈련과 실제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 진행되는 실행기반 훈련으로 분류 함
- 토론기반 훈련은 훈련 참가자들이 현재의 대응계획과 매뉴얼에 익숙하도록 하며, 기관 간 협력계획 및 절차들을 부각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훈련참가자의 행동은 상상 또는 가상으로 설정 됨
  - 토론기반 훈련으로는 설명회, 세미나, 워크숍,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훈련, 사고수습본부 운영 훈련, 기관장 주재 자체점검회의 등이 있음
- 실행기반 훈련은 토론기반 훈련보다 복잡성과 난이도가 높은 훈련으로 토론기반 훈련에서 확정된 계획, 정책, 협약 및 절차들을 검증하는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가상상황에 대한 실제 행동에따른 훈련 임
  - 실행기반 훈련으로는 기능훈련과 실제훈련(종합훈련)이 있음
- 훈련의 복잡성과 난이도는 세미나(워크숍 등)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훈련(사고수습본부 운영 훈련 등) → 기능훈련 → 실제훈련(종합훈련) 순으로 증가 함
  - 중장기 훈련은 검증하려는 역량에 대하여 복잡성과 난이도가 낮은 유형에서 높은 유형으로 진행하는 벽돌쌓기 접근방법에 따라 모든 훈련유형을 활용하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 개별(단기) 훈련은 유형에 관계없이 5단계 훈련과정(훈련 기획-설계-수행-평가-개선계획 수립)이 적용되어 실시되어야 함

**정책 정보**

**[재난대비 훈련의 유형]**

훈련 공간		내 용
토론 기 반 훈 련	세미나(설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난대비훈련의 가장 기초단계</li> <li>세미나(설명회)만을 별도로 실시하거나 다른 훈련의 사전활동으로 실시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련 전 실시하는 관계관 회의도 설명회의 한 종류로 볼 수 있음</li> <li>- 세미나를 통해 대응계획과 매뉴얼에서 훈련 참가자들에게 부여된 임무를 설명하여 숙지도록 함</li> <li>- 개정된 법규나 수정된 대응계획과 매뉴얼 등을 설명하기 위한 회의도 세미나에 포함 됨</li> </ul> </li> </ul>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워크숍만을 별도로 실시하거나 다른 훈련의 사전활동으로 실시할 수 있음</li> <li>특정 목표의 달성 또는 결과물(훈련목적, SOP, 정책, 계획 등)을 생산하기 위한 회의</li> </ul>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훈련, 사고수습본부 운영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난상황에서의 임무와 역할을 발표·토의하여 기능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문제점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 작성된 재난단계별 표준행동절차에 대한 비판적 토론을 통하여 문제점을 발굴·보완하는데 중점을 둠</li> </ul> </li> <li>재난대응 협력체계와 역할 분담 확인</li> </ul>
	기관장 주재 자체 점검회의 (초기대응 훈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난관리책임기관이 초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관장 및 주요 간부가 훈련에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장 주재 하에 소관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재난사태 및 대처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훈련 임</li> </ul> </li> <li>초기대응 방안 토의를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사항은 기관별 안전관리계획 등에 반영</li> </ul>
실행 기 반 훈 련	기능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능 또는 여러 기능들의 조합을 검증하기 위한 훈련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안전대책본부 같은 유관기관 조정센터의 근무요원에 훈련의 초점을 맞춤</li> <li>- 현실적이고 긴장감 있는 실시간(real-time) 환경에서 수행되며 인력과 장비는 실제로 이동하지 않고 가상적으로만 이동</li> </ul> </li> </ul>
	실제훈련 (종합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능훈련과 현장의 대응활동 및 자원의 실제 이동을 결합한 종합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응계획 상의 기능 대부분을 포함하여 실시되며</li> <li>- 인력과 장비가 실제로 배치, 실제 재난상황과 유사하게 긴장감 있고 시간에 제약 받는 환경에서 훈련 실시</li> </ul> </li> </ul>

**8. 훈련 과정(절차)**

- 훈련의 과정은 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절차로서 훈련 기획·설계·수행·평가·개선계획 수립의 5단계로 구분하며, 훈련준비(기획·설계)·실시·평가(개선)의 3단계로도 구분한다.
  - 각 단계는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순환적이며 한 단계의 결과는 다음 단계의 입력 자료로 사용
  - 평가 결과는 다음 훈련의 근거자료로 활용

[재난대비 훈련의 과정(절차)]

훈련 공간		내 용
준 비	기 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련을 준비하고 실시하며 평가하는데 필요한 토대를 구축하여 성공적인 훈련을 위한 기초를 확립하는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련기획팀 구성, 추진일정 수립, 훈련 기본계획 수립 등</li> </ul> </li> </ul>
	설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련기획 단계의 결과를 기반으로 훈련을 설계하는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련 목표 설정, 시나리오 개발, 훈련 시행계획 수립 등</li> </ul> </li> </ul>
실 시	수 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론기반 훈련의 수행은 발표·촉진·토론을 수반하며, 실행기반 훈련의 수행은 시작부터 종료까지 모든 실행사항을 수반 함</li> </ul>
평 가 (개 선)	평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련활동을 목표와 비교하여 기관의 강점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문서화하는 것</li> <li>• 평가단계에서 얻어지는 분석결과는 개선계획 수립 활동에 반영</li> </ul>
	개 선 계 획 수 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련결과 보고서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함</li> <li>• 조치사항의 각 항목에 대한 담당부서와 담당자를 지정하고 추진 경과를 수시로 확인 함</li> </ul>

## V. 재난대비 훈련과정

### 1. 훈련 기획

재난대비훈련을 준비하고 실시하며 평가하는데 필요한 토대를 구축하여 훈련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기초를 확립하는 것

#### 가. 훈련기획팀 구성·운영

##### (1) 구성·운영 및 규모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대비훈련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훈련기획팀을 구성·운영 함
  - 훈련기획팀은 훈련목표 설정, 훈련의 설계·수행·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함
- 훈련기획팀의 규모는 훈련 주요부서를 대표하는 실무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며 훈련의 유형이나 규모에 맞게 조정 함
  - 실행기반 훈련기획팀의 규모는 토론기반 훈련보다 지인·협조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보다 많은 팀원이 필요
  -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팀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음
  - 훈련유형이나 가용인원에 따라 축소되거나 확대될 수 있지만 소규모의 복잡성이 낮은 훈련의 경우 4

**정책 정보**

~5명의 핵심그룹만으로 훈련기획팀 업무를 시작 할 수 있음

- 소규모 팀의 경우 팀원이나 반장에게 추가로 다른 역할을 부여 할 수 있으나 너무 작은 규모의 조직을 구성하여 인원 부족을 유발해서는 안 되며 한 사람이 여러 일을 동시에 진행하여 소홀히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다수의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복잡한 대규모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기획팀을 구성하도록 함

**(2) 구성 · 운영의 원칙**

- 훈련기획팀은 조직화된 구조와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고, 리더십을 발휘하여야 하며 원활한 팀워크를 유지하여야 함

**[ 훈련기획팀의 구성 · 운영 원칙 ]**

구 분	내 용
조직화된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팀장을 정점으로 팀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조직화된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팀원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은 물론 팀 전체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함</li> <li>• 각 활동들은 적절하게 팀원에게 배정되어야 하며 완료시점도 명확하게 정해져야 함</li> </ul>
전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련기획 과정에서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을 적절히 받아 현실감 있는 도전적인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훈련기관이 사건에 대한 관리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함</li> </ul>
리더십과 팀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련기획팀의 구성원은 멘토링, 동기부여, 규율 등 적절한 리더십 원칙을 준수하고 팀장과 함께 모두 필요에 따라 그 책임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함. 또한 성공적인 훈련기획을 위해 모든 팀원들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원활한 의사소통 구조를 유지하여야 함</li> </ul>

**나. 일정 수립**

**(1) 핵심 활동에 대한 일정 수립**

- 훈련기획팀은 가장 먼저 핵심 활동에 대한 일정을 수립해야 하고 업무완수 기한은 훈련기획팀이 보유한 자원에 근거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설정
- 실행기반 훈련의 경우 고품질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 토론기반 훈련보다 더 상세하고 치밀한 계획 수립 과정이 필요하며, 간트차트 같은 상세한 프로젝트 관리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음

**(2) 훈련기획 회의(훈련 관계관 회의)**

- 훈련설계를 위한 회의 일정을 정하는 것이 훈련일정 수립의 중요한 사항 임
  - 훈련기획팀과 참가기관 관계관이 함께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상호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시나리오를 개발하며 임무와 역할을 발표하는 등 참가기관과 함께 훈련을 준비 함
- 훈련기획 회의는 훈련의 규모나 여건에 따라 개최 횟수를 결정 함



- 참석자에게 회의에 관한 자료를 사전에 제공(가능한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함
- 참석자에게 배부되는 자료는 회의 안건 및 예상되는 결과 등을 내용으로 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

#### 다. 훈련 기본계획 수립

- 훈련일정 수립 후 훈련의 개요와 범위를 정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훈련기획팀이 작성한 기본계획 초안을 유관기관 관계관이 참석하는 검토회의를 거쳐 확정 함
- 기본계획 초안 작성은 훈련의 필요성과 범위를 설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 함
  - 훈련 대상 재난 및 기능, 참여기관, 훈련유형을 도출하고 범위를 정하는 것이며 매뉴얼과 대응계획, 앞선 훈련의 평가 결과 등을 분석정보로 활용 함

#### [훈련 기본계획 수립 시 착안 사항]

착안사항	내 용
훈련 대상 재난 및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재난환경 및 정책의 변화를 고려하여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적으로 한 개의 중요한 재난과 2~3개의 기능을 대상으로 범위를 정함</li> </ul> </li> <li>• 훈련 대상 재난 및 기능이 정해지면 훈련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지향점, 즉 목적이 도출 됨</li> </ul>
취약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련대상 재난에 대한 관할구역 내 취약장소를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약장소가 선정되면 재난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훈련유형에 따라 실내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상황실이 운영되거나 해당 장소에서 종합훈련이 실시 됨</li> </ul> </li> </ul>
참여기관 및 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뉴얼과 대응계획에 수록된 유관기관을 기준으로 훈련 목적을 검토하여 선정</li> <li>• 훈련 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관기관은 반드시 참여토록 함</li> <li>• 훈련 목적이 지휘기능을 검증하여 향상시키는 지휘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자가 훈련에 참여해야 함</li> </ul>
훈련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벽돌쌓기 접근법에 따라 훈련 유형을 기준으로 훈련 목적 및 제약 요건을 고려하여 선정</li> </ul>

## 2. 훈련 설계

### 가. 훈련 목표 설정

#### (1) 목적과 목표

- 재난대비훈련에서는 훈련의 지향점을 목적으로, 훈련을 통하여 수행된 과업의 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게 설정된 기준을 목표로 구분하여 정의 함

**정책 정보**

(2) 원칙

- 훈련 목표는 시나리오 개발의 기본골격이 되고 평가의 기준을 제시 함
- 훈련 목표는 단순하고(Simple), 측정 가능하며(Measurable), 달성할 수 있고(Attainable), 현실적이며(Realistic), 업무중심적(Task-oriented)으로 설정해야 함(SMART 원칙)

**[ 훈련 목표 설정(예시) ]**

- 훈련주체가 훈련계획에서 통신기능을 검증하기로 했다면 다음과 같이 SMART 원칙에 따른 훈련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음

(훈련 목표)

'00시와 00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간 주 통신체계가 재난으로 마비된 경우 30분 내에 대체 통신체계를 가동시킨다'

- 훈련을 적기에 실시하고 시나리오를 합리적으로 개발하며, 훈련 목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 목표의 수를 제한하는 것이 효율적 임
- 훈련 유형의 특성에 따라 토론기반 훈련은 전략적이고 정책적인 문제에, 실행기반 훈련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초점을 두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훈련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 임

**나. 시나리오 개발**

(1) 의의

- 시나리오는 시간 흐름에 따라 이야기 되거나 묘사되는 연쇄적인 가상 사건들의 개요로서, 서술 형식이 나 시간표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음
- 훈련 목적 달성을 촉진할 수 있는 시나리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훈련의 목적과 목표를 반영한 시나리오를 선택하고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2) 구성요소

- 시나리오는 다음 3가지 기본요소로 구성 됨
  - 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경위 또는 포괄적인 줄거리
  - 훈련참가자가 훈련 목표에 대한 능숙함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조건들
  - 시나리오의 조건들과 사건들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인 세부사항들

(3) 개발 절차

- 시나리오 개발은 다음 절차를 따름
  - 시나리오의 위험유형에 대한 내부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받는다
  - 시나리오에 현실감을 더해줄 배경 정보를 조사하고 수집한다

- 시나리오 초안을 작성하고 검토한다
  -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체적인 개요를 작성한다
  - 주요 사건들에 대한 시간표를 작성한다
  - 시간표에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추가한다
  - 모든 사건들과 훈련참가자에게 기대되는 활동 목록인 시나리오 초안을 작성한다(훈련참가자에게 기대되는 활동은 대응계획 및 매뉴얼에 근거한다)
- 초안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하여 토론한다
- 초안이 논리적이며 현실적인지 다시 검토하고 보완한다

(4) 고려 사항

- 훈련으로 검증하려는 역량과 과업, 훈련 목표를 고려하여 시나리오를 선택하고 개발하여야 함
- 이 외에도 현실감의 정도, 위험의 유형, 훈련장소 선택, 날씨변수, 훈련실시를 위한 최적의 일시 등 시나리오를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할 다른 많은 사항이 있음
- 가상 시나리오의 작성은 실명을 배제하되 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선정
- 시나리오는 실제적이고 도전적이어야 하지만 훈련참가자를 압도할 만큼 복잡해서는 안 됨

[ 시나리오 개발 시 주요 고려 사항 ]

고려사항	내 용
현실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나리오는 훈련기관이 직면하고 있는 발생 가능한 위험을 반영하여 훈련참가자가 실제 일어난 사건처럼 믿을 수 있게 해야 한다.</li> <li>• 훈련기관의 위험요소나 취약점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시나리오에 현실감을 더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를 들어, 지진이 발생하기 쉬운 지역의 시나리오는 그 지역에 강한 지진이 발생한 것을 가상 상황으로 설정할 수 있다. 또한 훈련기획팀은 시나리오에 현실감을 부여하기 위해 이전의 실제 사건이나 지역의 대응계획도 고려해야 한다.</li> </ul> </li> <li>• 시나리오에 부여되는 세부사항의 정도는 현실세계의 불확실성을 반영해야 한다. 다만, 현실감을 더하기 위해 인물이나 단체, 장소의 실명을 사용하는 것은 민감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li> </ul>
위험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나리오 개발의 첫 단계는 훈련이 중점을 둘 위험의 유형을 결정하는 것이다. 훈련기획팀은 훈련이 초점을 맞출 기능과 훈련 목표를 검증할 수 있는 위험을 선택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를 들어, 주민을 긴급대피 시키는 훈련기관의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태풍 시나리오를 선택하는 것이다.</li> </ul> </li> <li>• 이러한 위험 유형 결정은 지역의 위험요소와 취약성에 대한 분석에 기초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를 들어, 인구밀도가 높고 대중의 관심이 높은 지역은 농촌지역보다 화생방테러의 위험이 더 고려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산불은 산악지역의 관심대상이 되고, 해일은 해안지역에서 더 큰 위협으로 고려될 것이다.</li> </ul> </li> </ul>

**정책 정보**

고려사항	내 용
훈련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련 장소는 시나리오 상황이 발생하는 시설 또는 장소이다. 장소 선택은 결정된 위험에 기초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를 들어, 테러리스트가 신경작용제인 사린가스로 공격하는 위험이 결정되면, 훈련 장소가 경기장이나 공원 같은 트인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위험의 특징이 소멸될 수 있기 때문이다.</li> </ul> </li> <li>• 실행기반 훈련의 경우 반드시 시나리오에서 설정된 장소와 동일한 곳에서 훈련을 실시할 필요는 없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를 들어, 공항 활주로 대신 경기장의 주차장을 사용하여 훈련할 수도 있다. 또한 훈련 장소의 관계인(경기장이 훈련장소인 경우는 매점직원, 보안요원 등)이 진행요원으로 참여토록 하여 경고나 대피유도 같은 내부절차를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도 있다.</li> </ul> </li> <li>• 실행기반 훈련을 위한 적절한 장소를 선택하기 위해, 훈련기획팀은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련 실시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갖추었는가?</li> <li>- 교통 같은 일상 활동으로부터 혼란을 적게 받는가?</li> <li>- 평가단, 참관인, 기자단 등을 위한 공간이 확보되는가?</li> <li>- 주차공간은 적절하게 확보되는가?</li> </ul> </li> </ul>
기상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행기반 훈련을 실제 기상 조건으로 실시할지, 가상 기상 조건 하에서 실시할지에 관한 결정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를 들어, 화학물질의 빠른 확산을 가정하기 위해 풍향과 풍속을 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만약 기상 조건이 가정되면, 가상 기상 조건에 대한 정보가 훈련 시행계획에 기재되어야 한다.</li> </ul> </li> <li>• 실제 기상 조건은 훈련참가자의 안전 문제와 관련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를 들어, 혹서기에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한 훈련참가자는 열사병에 걸릴 위험이 있으므로 참가자의 신체 상태가 면밀히 관찰되어야 한다.</li> <li>- 이러한 안전 문제는 시행계획에서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li> </ul> </li> </ul>
훈련 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행기반 훈련의 경우 시나리오에서 설정된 상황 발생 일시에 따라 훈련 실행이 영향을 받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를 들어 중요한 스포츠경기가 개최되는 날에 훈련을 실시하면, 교통흐름이 변하여 대피 경로나 대응시간에 영향을 주게 된다.</li> </ul> </li> <li>• 또한 일과시간 이후의 자원 활용 정도를 시험하고 교통흐름이나 일상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주말이나 야간에 훈련을 실시할 수도 있다</li> </ul>

**다. 훈련 시행계획 초안 작성**

- 훈련설계를 바탕으로 시행계획 초안을 작성, 시행계획은 훈련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은 문서임

### [ 훈련 시행계획 주요내용(예시) ]

- 목적과 목표
- 일시 및 장소
- 참가기관 및 인원
- 시나리오 개요
- 진행 순서
- 가상상황에 따른 기관별 임무와 역할 요약(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훈련)
- 훈련 실행 시 참가자의 임무와 역할(실행기반 훈련)
- 안전에 관한 사항(실행기반 훈련)
- 장비와 물자(실행기반 훈련)

#### 라. 훈련 시행계획 수립

- 관계관 회의 결과를 토대로 초안을 수정·보완하여 훈련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실제적인 훈련을 위해 시행계획에는 시나리오의 개요만 수록 함

#### 마. 훈련 일정표 작성 및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훈련 시행계획 수립 완료 후 훈련 당일에 있을 일정표를 작성하고 그 일정표에 맞게 훈련 준비에 착수 함
- 훈련이 실시하기 전까지 기관장 및 간부가 참석하는 훈련 준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 훈련 준비에 대한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보고하고 훈련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 함

### 3. 훈련 수행

#### 가. 세미나

- 주로 강의식으로 진행 함
  -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발표자가 훈련 대상 대응계획과 매뉴얼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은 설명 내용에 대한 의견 및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
- 최종보고서 또는 요약보고서 작성
  - 세미나 수행 후 공식적인 사후조치보고서 및 개선계획 형태는 아니지만 토론된 내용과 이슈에 대처하기 위해 작성

#### 나. 워크숍

- 주로 회의식으로 진행 함

## 정책 정보

- 한명이 워크숍 계획과 목적 등을 설명하면 다른 여러 명이 거기에 대한 의견 등을 제시하여 최종적으로 합의된 결과물을 도출
- 최종보고서 또는 요약보고서 작성
  - 훈련 목표에 따라 훈련목적 도출, SOP 작성, 정책계획 수립 등 보고서 형태로 작성이 필요하며, 훈련에 반영

### 다. 기관장 주재 자체 점검회의(초기대응 훈련)

- 세미나, 워크숍의 형태로 진행
  - 각 기관의 기관장 및 주요 간부가 훈련에 참여하고 기관장이 주재(유관기관 미 참여)
  - 자기 소관분야의 초기 대응 절차 발표 및 토의
- 최종보고서 또는 요약보고서 작성
  - 초기대응방안 토의를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사항은 보고서로 작성하여 기관별 안전관리계획 등에 반영

### 라. 재난안전대책본부(사고수습본부) 운영 훈련

#### (1) 개요

- 재난상황을 가정하되 긴박하지 않은 환경에서 진행되는 토론기반 훈련
- 훈련의 주요 핵심사항
  - 재난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관리자 또는 핵심 실무자가 참석하여 시나리오에 따른 부서·기관별 임무와 역할 및 문제점을 토의함으로써 임무와 역할, 절차에 익숙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춤
- 진행자가 훈련을 진행하며, 발표 및 토의에 필요한 시설 외에 별도의 훈련장비나 통신시설이 요구되지 않음
- 훈련의 특징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훈련은 많은 측면에서 브레인스토밍과 유사하고, 긴박하지 않은 환경에서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충분히 토의한다는 점에서 기능훈련과 다름
  - 훈련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여 대응계획 및 매뉴얼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진행자의 역량이 중요 함
- 훈련의 장·단점
  - 비용과 자원이 적게 들고 참가자가 대응계획과 매뉴얼을 익히며 검토하는데 효과적인 장점이 있지만, 실제성이 부족하여 재난대응체계의 역량을 전반적으로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2) 장비와 물자

- 참석자들이 편안하게 대면하여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장소라면 어느 회의시설이라도 무방하지만 실감나는 훈련과 장비 활용을 위해 상황실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참석자 수에 맞춰 탁자를 준비하고 배치 함
  - 여건에 따라 소그룹별로 배열할 수도 있고, 전체적인 U자형으로 배열할 수도 있음
- 훈련물자에는 대응계획과 매뉴얼을 비롯하여 통상적으로 상황실에서 활용되는 물품이 포함되어야 함

(3) 훈련 진행

- 재난안전대책본부(사고수습본부)의 실제 운영체계를 모델로 상황판단회의(위기평가회의)와 유관기관 임무 발표 · 토의의 두 단계로 구분
  - 하지만 엄격하게 구조화된 진행체계를 가진 것은 아니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음
- 기능훈련과 종합훈련이 상호작용하는 훈련인데 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훈련은
  - 편안한 환경에서 진행자에 의해 실시되는 문제 해결 훈련 임
  - 진행자는 모든 참석자가 훈련에 참여토록 하고, 깊이 있는 문제 해결을 유도하며, 훈련의 흐름을 조절 함

[훈련 단계별 내용]

훈련 구분	내 용
상황판단회의 (위기평가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상재난 발생에 따른 기관 내 부서별 임무와 역할을 발표 · 토의하는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제 상황판단회의와 동일하게 부서장이 참석하며, 담당 부서장 또는 핵심 실무자가 진행을 맡음</li> </ul> </li> <li>• 진행순서는 가상재난 및 부서별 임무와 역할 개요가 수록된 상황판단회의 자료를 담당 부서장(핵심 실무자)이 발표한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련 설계 단계에서 작성한 부서별 임무와 역할을 각 부서장(핵심 실무자)이 발표</li> <li>- 이후 훈련기획팀이 사전 도출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토의를 진행</li> </ul> </li> <li>•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훈련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무부처에서 같은 방식으로 위기평가회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대본 유관기관 임무 발표 · 토의 시간에 담당 부서장(핵심 실무자)이 발표</li> </ul> </li> </ul>
유관기관 임무 발표 · 토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황판단회의가 종료되면 잠시 휴식시간을 가진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 참석자들은 퇴장하고 외부 유관기관의 부서장(핵심 실무자)들만 참석한 가운데 훈련 설계 단계에서 작성한 가상재난 발생에 따른 기관별 임무와 역할을 발표</li> <li>- 이후 훈련기획팀이 사전 도출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토의를 진행</li> </ul> </li> </ul>

**정책 정보**

**(4) 진행 방법**

- 진행자는 커뮤니케이션 기법과 기관별 임무와 역할에 익숙해야 하며, 토의 주제 이상의 더 광범위한 역할을 해야 함
- 훈련을 진행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구 분	내 용
도 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입 단계에서의 인사말과 행동이 훈련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친다. 참석자에게 훈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주고 편안함을 느끼도록 한다. 도입 단계를 진행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영 : 진심어린 환영으로 편안함을 느끼도록 하며, 참석자를 소개한다.</li> <li>- 훈련 개요 설명 : 참석자들에게 훈련의 목적과 목표, 진행 절차에 대해 알려준다.</li> <li>- 이야기 : 가상재난 개요를 읽는 것으로 시작한다.</li> <li>- 아이스브레이킹 : 한두 명의 고위 참석자나 그룹에게 평범하고 쉬운 질문을 하여 어색한 분위기를 누그러뜨린다.</li> </ul> </li> </ul>
모든 참석자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참석자가 토의에 참여하게 하고 소수의 참석자만이 토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참석자가 참여하게 하는 방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련 설계 과정에서 모든 참석자가 참여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문제점을 도출한다.</li> <li>- 과묵한 참석자를 특별히 격려한다.</li> <li>- 참석자들 간 논쟁이 벌어졌을 때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여 토의를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대신 참석자들로부터 답을 이끌어내도록 한다. 참석자는 다른 사람들이 주의 깊게 공감하며 자기의 말을 들어준다고 생각할 때 보다 더 참여하려 할 것이다.</li> <li>- 참석자들에게 원하는 행동의 모범을 보여주고 격려한다.</li> </ul> </li> </ul>
깊이 있는 문제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상황에서의 임무와 역할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문제점을 도출·개선하기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문제점에 대한 깊이 있는 토의를 통하여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li> <li>• 한 번의 훈련으로 모든 기능을 검증하려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준비하여 피상적인 해결방안만 빠르게 찾아내는 것은 좋은 접근법이 아니다.</li> <li>• 하나의 중요한 문제점에 대해 모든 시간을 사용하고 참석자들의 관심을 유지하는 것이 훈련의 성공임을 기억해야 한다.</li> <li>• 훈련 설계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해결방안이 제시될 수 있는 질문을 몇 가지만 주의 깊게 선택하여 집중 토의함으로써 논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된다.</li> </ul>
활동의 조정과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유지하기 위해서 진행자는 훈련 활동을 조정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몇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련 설계 과정에서 여러 개의 상황 전개 과정으로 구성된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하나의 상황에 대한 논의가 끝나면 다음 상황에 대한 토의를 진행한다.</li> <li>- 질문을 더 하거나 덜 해서 참석자들의 활동 속도를 조절한다.</li> <li>- 한 문제에 대해 너무 오래 또는 너무 빠르게 토의하지 않게 균형을 유지한다. 훈련이 너무 느슨해지지 않도록 타이트하게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li> <li>- 참석자들은 훈련 경험이 적고 쉽게 좌절할 수 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훈련은 기본적으로 훈련일 뿐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참석자들이 좌절하거나 갈등하지 않고 편안한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배려한다. 참석자들이 좌절하거나 갈등이 증가되는 것을 관찰하면 훈련을 멈추고 휴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li> <li>- 진행자는 시작부터 끝까지 절제된 태도를 유지한다.</li> </ul> </li> </ul>



## 마. 기능 훈련

### (1) 개요

- 기능훈련은 인력과 장비가 실제 이동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실제적인 방법으로 재난상황을 가정 함
- 명칭이 암시하는 것처럼, 훈련의 목적은 재난 발생 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능 수행 역량을 검증하거나 평가하는 것이나
  - 다른 모든 훈련도 13가지 재난대응기능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능훈련의 ‘기능’을 13가지 재난대응기능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 함
  - 여기서의 ‘기능’은 재난 대응 및 복구를 위한 행동 또는 조직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기능훈련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기능훈련의 주요 특징

- 종합훈련과 같은 높은 비용이나 안전성에 대한 위험 없이 재난대응체계를 전체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설계된 상호작용 훈련으로, 주로 상황실에서 실시된다.
- 참가자, 통제단, 평가단이 참여한다.
- 실시간 대응과 문제상황의 실제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된 분위기에서 실시된다.
- 주의 깊은 기획과 시나리오 개발, 그리고 세부사항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길고 복잡한 훈련이다.
- 참가자는 통제단에 의해 신중하게 계획되어 부여되는 일련의 메시지에 대하여 실제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한다.
- 모든 결정과 행동은 실시간으로 발생하고 다른 참가자의 실제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킨다.

- 기능훈련은 다음 사항을 검증하는데 유용하게 활용 됨
  - 대응계획과 매뉴얼의 적합성
  - 개인 또는 부서 · 기관의 임무와 역할
  - 의사결정 절차
  - 기관들 간 통신 및 정보 공유
  - 재난 대응을 위한 자원의 적정성

### (2) 참여자

- 기능훈련에는 참가자, 통제단, 평가단이 참여한다. 훈련의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한두 사람이 통제단과 평가단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규모가 큰 경우는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 됨

**정책 정보**

참여자(구분)	내 용
참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능훈련의 참가자는 상황실에서 중요한 의사결정과 기관 간 조정을 하는 관리자와 실무자이다.</li> <li>• 대응계획과 매뉴얼을 참조하여 참가자를 결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가자의 역할은 훈련 중 전달되는 메시지에 실제 상황처럼 대응하는 것이다.</li> <li>-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참가자의 모든 결정과 행동은 다른 참가자들의 실제 반응과 결과를 불러일으킨다.</li> </ul> </li> </ul>
통제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련기획팀이 통제단으로 전환하여 참가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훈련 진행을 조정한다.</li> <li>• 규모가 작은 훈련의 경우 참가하지 않은 유관기관의 역할을 대신하기도 한다.</li> </ul>
평가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가자의 행동과 의사결정을 관찰하여 잘된 점과 부족한 점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를 위해 평가단은 훈련 목표, 시나리오, 참가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숙지해야 한다.</li> </ul> </li> </ul>

(3) 장비와 물자

- 실제적인 훈련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실제 상황실과 장비를 활용 함

(4) 훈련 진행

훈련 진행	내 용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련목표에 따라 시작이 달라진다. 상황전파 기능을 검증하기 위해 불시에 훈련을 시작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미리 참가기관에 시작 시간을 공지한다.</li> </ul>
개요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가자에게 훈련의 목표와 진행방법에 대하여 짧고 간략하게 설명한다. 훈련의 실제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나리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피하도록 한다.</li> </ul>
메시지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제단이 시나리오에 따라 메시지를 전달하면, 참가자들은 실제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고 상호작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메시지는 문서, 전화, 무선, 인편 등으로 전달된다. (예를 들어) 메시지의 내용이 대피경로를 막고 있는 교통사고에 대한 현장지휘관의 보고라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황실의 참가자는 새로운 대피경로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다시 통제단에 메시지로 전달하는 것이다.</li> </ul> </li> </ul> </li> <li>•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훈련에서는 지원요청에 대한 응답 등 상황실 간 상호작용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현장에서 복구장비가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받은 참가자가 관리자에게 구두로 보고하고 전화로 유관기관에 지원요청을 하면, 요청을 받은 유관기관 참가자 역시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장비의 갯수를 파악하여 몇 개의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응답하는 것이다.</li> <li>• 참가자가 실제 상황에서와 같이 기능을 수행하는 정도에 훈련의 성공이 달려 있기 때문에, 참가자가 각각의 메시지를 실제 상황으로 생각하도록 유도한다.</li> </ul>
메시지 전달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가자들이 훈련 상황이라는 제약을 받지 않고 실제 재난 대응과 같은 범위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통제단은 참가자의 예상하지 못한 대응에 대비해야 한다.</li> <li>• 통제단은 메시지에 의한 상호작용을 주의 깊게 관찰하다가 필요한 경우 예정된 메시지 전달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를 들어 예정된 메시지에 앞서 상황실에서 소방차량 지원을 요청했다면, 같은 내용의 메시지 전달을 중단하는 것이다.</li> </ul> </li> </ul>

훈련 진행	내 용
메시지 전달 조정	• 통제단은 또한 훈련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거나 지루해질 경우 메시지 전달 간격을 조정하여 훈련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한다.

## 바. 종합 훈련

### (1) 개요

- 종합훈련은 실제 재난 발생을 가장 비슷하게 가정된 긴장된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진행 됨
  - 인력과 장비가 현장으로 이동되고 배치되며, 기능훈련과 결합되어 상황실이 운영 됨
  - 토론기반훈련을 기초로 종합훈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종합훈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원의 수준은 다른 유형의 훈련보다 훨씬 높음
- 종합훈련을 수행할 장소는 다른 유형의 훈련에 비해 광범위하고 그 엄격하게 경비되어야 함
- 소품의 사용과 특수효과에 관한 문제를 포함하여 안전에 관한 문제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함

### (2) 현장에서의 수행 방법

#### 가) 사전준비

- 훈련준비팀은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훈련 수행을 준비 함
  - 브리핑실을 배열하고 시청각장비를 설치하며, 소품과 도구를 준비하고 훈련장 구역별로 표시를 하고,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인 요소를 점검 함

#### 나) 참여자

구 분	내 용
참가자	• 훈련에서 평소 맡은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여 기관의 재난대응 역량 수준을 나타내는 참여자이다.
통제단	• 훈련을 계획하고 준비하며 관리하는 참여자이다. • 훈련기획팀이 훈련 실시 단계에서 통제단으로 전환한다. • 시나리오에 따라 훈련이 진행되도록 재난 상황을 연출하고, 메시지 등으로 참가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평가단	• 훈련참가자의 의사결정과 행동을 평가지표에 따라 관찰·확인하여 잘된 점과 미흡한 점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참여자이다.
연기자	• 희생자와 대피자 역할을 하는 시민처럼, 훈련에서 특정한 가상 역할을 수행하는 자발적인 참여자이다. • 연기는 훈련에 참가하지 않는 기관이나 단체 대신 활동하는 역할을 맡을 수도 있다.
참관단	• 훈련의 전 국면이나 일부를 선택하여 관찰하지만, 훈련에 개입하지 않는 참여자이다.

**정책 정보**

다) 브리핑

- 훈련 실시 전, 브리핑을 통해 참여자에게 역할과 임무에 대하여 알려 줌
- 참가자부터 참관단까지 그룹별로 브리핑을 실시하여 해당 그룹에 필요한 자료만 제공 함
- 훈련기획팀의 인원이 충분하다면, 훈련시작이 지연되지 않도록 그룹별 브리핑을 동시에 실시할 수도 있음
  - 브리핑은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진행

구 분	내 용
통제단 및 평가단 브리핑	• 통제단 및 평가단에 대한 브리핑은 보통 훈련 전일 실시한다. 브리핑은 훈련장소·일시·진행 순서·시나리오를 포함하는 훈련 개요와 관리단 및 평가단의 임무, 기타 정보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으로 진행되며, 1~2시간 정도 소요된다.
참가자 브리핑	• 훈련 시작 15~30분 전, 훈련통제단은 참가자에게 각각의 역할과 임무, 훈련 진행, 안전, 인식 표, 물자 등에 관해 궁금한 사항을 알려주는 브리핑을 실시한다.
연기자 브리핑	• 연기자에 대한 브리핑은 훈련 1일 전 및 당일 아침에 실시한다. • 통제단 중 연기자 담당자가 훈련 개요, 안전, 실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절차, 증상을 기재한 표, 연기 지도, 진행 일정에 관한 브리핑을 실시한다. 브리핑을 하기 전이나 진행되는 동안, 인식표나 증상을 기재한 표를 배부한다. 분장이 필요한 경우, 브리핑 실시 전에 마쳐야 한다.
참관단 브리핑	• 참관단과 VIP에게 훈련 개요, 시나리오, 진행 일정, 기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참관단 브리핑은 보통 훈련 당일 실시되며, 1시간 정도 소요된다.

라) 훈련 실행

- 훈련은 참가자에 의해 통제되는 환경에서 계속 됨.
- 훈련이 실행되는 동안, 자원대기소의 통제단원은 안전하고 실제적인 훈련단위의 배치를 위하여 다른 관리단원과 긴밀하게 통신 함
  - 이와 같이 자원대기소의 통제단원이 훈련단위의 배치를 조정하는데, 이것이 훈련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
  - 따라서 훈련기획팀은 기관별 실제 출동시간에 근거한 시간대별 배치표를 작성하여야 함
- 시간대별 배치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자원대기소의 통제단원에게 바로 통보하여 배치표를 변경함으로써 훈련이 원활하고 실제적으로 진행되도록 함

**4. 훈련 평가**

가. 정의

- 훈련 활동을 목표와 비교하여 기관의 강점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문서화하는 것
- 평가단계에서 얻어지는 분석결과는 개선계획 수립 활동에 반영되며 이를 위해 평가단원은 훈련 진행 상

황을 관찰하고 기록 함

**나. 평가절차**

- 평가는 훈련설계 단계에서 평가단장을 위촉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평가단장은 평가에 관한 경험이 풍부 하여야 함
- 이후 평가단장과 훈련기획팀원은 다음 사항을 준비한다.
  - 평가단원 선입과 오리엔테이션
  - 평가계획 수립
  - 평가지표 작성
  - 평가활동 조정
  - 훈련 종료 후 즉시 평가 개최
  - 평가보고서 작성

**(1) 평가단 구성**

- 평가단의 규모는 훈련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결정 됨
- 평가단원의 수는 훈련에 참가하는 기관의 수, 훈련장소, 훈련목표 등에 따라 달라 짐
- 평가단원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 함

구 분	내 용
평가단원의 소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단원은 훈련설계 과정에서 기관의 내부 구성원과 외부 기관 구성원 중 선임할 수 있다.</li> <li>• 인력에 여유가 있다면 기관의 대응계획 및 매뉴얼에 익숙한 내부 구성원을 우선 고려한다.</li> <li>• 소속 구성원 중 평가단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 외부기관의 예는 다음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급 및 인접 재난관리책임기관</li> <li>- 민간의 전문적인 평가자 또는 재난전문가</li> <li>- 대학교수</li> <li>- 공공기관(한전, KT 등) 또는 자원봉사조직</li> </ul> </li> </ul>
평가단원의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단을 구성할 때 평가단원이 재난대비훈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li> <li>• 평가단원은 또한 보고서 작성능력과 발표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li> <li>• 또한 훈련설계 과정과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문제를 조직화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보유하여야 하고,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상황을 처리하기 위한 정치적인 기술이 필요하다.</li> </ul>
평가단원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단원은 다음의 특징을 가져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단원 간 협력하는 능력 / 적당한 시간이 될 때까지 비밀을 유지하는 능력 / 필요시 질문을 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즉시 답변 할 수 있는 능력</li> <li>- 정직과 객관성(자신의 감정을 표출하지 않는)</li> <li>- 긴급한 상황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li> <li>- 섬세함</li> </ul> </li> </ul>

방재정보광장

**정책 정보**

(2) 평가 방법

구 분	내 용
훈련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련목적에 비추어 훈련참가자가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평가단원은 훈련진행 상황을 관찰하고 기록한다.</li> <li>• 평가단원이 훈련 중 기록한 사항은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li> </ul>
평가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단원은 객관적이고 효과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지표를 사용할 수 있다.</li> <li>• 평가지표는 평가단원이 확인해야 할 검토사항을 포함하고 정량적 지표 위주로 작성한다. 검토사항은 질문형식으로 구성된 문장이며, 평가단원은 평가지표에 서술된 대로 관찰하고 기록한다.</li> <li>• 평가지표는 다음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시된 목록이나 박스에 체크</li> <li>- 예/아니오에 간단하게 표시</li> <li>- 체계에 대하여 1점에서 5점까지 등급 부여</li> <li>- 질문에 대하여 주관식으로 기술</li> </ul> </li> <li>• 평가지표 등 훈련 관련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 평가단을 대상으로 훈련 전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li> <li>• 오리엔테이션에서는 훈련 시행계획·평가계획·평가지표가 설명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수 차례 실시할 수 있다.</li> </ul>
훈련 중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단원은 훈련통제단이 설치된 장소나 훈련현장 중 적절한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li> <li>• 평가단의 활동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훈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평가단원은 훈련 중 활동 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응매뉴얼, 훈련계획, 평가지표 숙지</li> <li>- 훈련 중 평가 및 판단 최소화</li> <li>- 훈련 수행에 대한 평가단의 영향 최소화</li> </ul> </li> </ul>

(3) 현장평가회의

- 훈련 종료 직후 훈련참가자가 느낀 점을 자유롭게 발표하는 현장평가회의를 실시 함. 토론기반과 실행기반 훈련 모두 해당 됨
- 현장평가회의는 통제단원 또는 평가단원 진행으로 훈련 직후 실시하여 훈련참가자에게 즉각적인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현장평가회의는 훈련참가자의 훈련에 대한 만족도 확인과 현안사항, 관심사 또는 개선사항 유무에 대한 확인 등을 위하여 훈련참가자의 기억이 생생할 때 통제단원 또는 평가단원이 평가를 수행 함.
- 현장평가회의에서 얻어진 정보는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음
- 또한 현장평가회의에서 피드백양식을 배포하여 향후 훈련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제안사항과 건설적인 비판 등을 수집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

(4) 평가회의

- 평가회의는 평가단원이 관찰한 것과 현장평가회의 결과 등을 논의하기 위해 훈련기획팀과 평가단이 참석하여 실시하는 대상으로 개최하는 공식적인 회의

- 평가회의는 훈련이 종료된 직후 또는 종료 후 수일 이내에 개최
- 훈련기획팀장이 회의를 주재하여 모든 참석자가 관찰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함
- 회의 내용은 기록하고, 강점과 개선 필요 사항은 분석하여 훈련결과보고서에 반영한다.

#### (5) 훈련결과보고서 작성

- 훈련 참여 기관에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 활용하는 문서로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 훈련목표 달성여부
  - 훈련시 발견된 대응체계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 권고사항
- 훈련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평가단은 현장평가회의, 평가회의, 평가지표, 기타 자료(대응계획 및 매뉴얼 등)들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고, 의도한 성과와 실제 얻어진 결과와 비교 함
- 훈련결과보고서의 분석수준은 훈련유형 및 범위에 따라 달라짐
- 훈련결과보고서의 결론은 다시 토론을 거쳐 훈련결과 보고회에서 검증되어야 함
- 훈련결과 보고회는 훈련이 종료된 이후 30일 이내에 개최 함

### 5. 개선계획 수립

- 훈련결과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여야 함
- 권고사항의 각 항목에 대한 담당부서와 담당자를 지정하고 추진 경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함

## VI. 재검토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0월 15 일까지로 한다.

## VII. 부 칙

-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 책 정 보**

**[별 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

• 주요재난

연번	재난 명	주관기관	비고	연번	재난 명	주관기관	비고
1	풍수해 재난	소방방재청	자연재난	13	감염병	보건복지부	사회적재난
2	지진 재난	소방방재청		14	가축질병	농림축산식품부	
3	대형 화산폭발	소방방재청		15	전력 분야	산업통상자원부	
4	산불 재난	산림청	인적재난	16	원유수급	산업통상자원부	
5	고속철도대형사고	국토교통부		17	원전안전	원자력안전위원회	
6	지하철대형화재	국토교통부		18	금융전산	금융위원회	
7	다중밀집시설대형사고	소방방재청		19	육상화물운송	국토교통부	
8	대규모환경오염 (해양/수질)	해양수산부 환경부		20	식·용수	환경부 국토교통부	
9	화학유해물질유출사고	환경부		21	보건의료	보건복지부	
10	댐 붕괴	국토교통부		22	정보통신	미래창조과학부	
11	공동구 재난	국토교통부		23	GPS 전파 혼신	미래창조과학부	
12	인접국가 방사능누출 사고	원자력안전위원회		24	우주전파 재난	미래창조과학부	

• 기타재난

연번	재난 명	주관기관
24	가 스	산업통상자원부
25	정부중요시설	안전행정부
26	항공기사고	국토교통부
27	항공운송마비	국토교통부
28	항행안전시설장애	국토교통부
29	도로터널	국토교통부
30	문화재사고	문화재청
31	접경지역사고 (감염병, 화학유해물질, 댐붕괴, 산불)	보건복지부 · 환경부 국토교통부 · 산림청
32	우 정	미래창조과학부
33	소방방재	소방방재청